

종 법(宗法)

고시위원회법

제1조 종헌 제97조에 의하여 본종 사부 대중의 법계 포교사의 고시와 기타 자격전형을 위하여 고시위원회를 둔다.

제2조 고시위원회는 법계고시와 각종 자격고시의 출제 및 채점과 전형을 행한다.

제3조 고시위원회는 종정이 임명하는 위원장 1명과 고시때마다 종정이 위촉하는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.

제4조 1. 고시 및 전형의 기준 고시방법과 내용은 위원회의 결의와 총무원장의 합의로 시행한다.

2. 고시와 전형은 엄정 공평하게 실시하여야 한다.

제5조 1. 종정은 위원회가 제4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 발생하였을 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발로되었을 때는 그 자격 취득을 무효로 한다.

2. 종정은 재고시를 명할 수 있다.

3. 고시위원회에서는 매 고시때마다 응시 자격과 고시의 종류를 명시하여 산하 교직자에게 통지 응시토록 한다.

4. 고시에 합격한 자는 위원장의 제청으로 종정이 자격증을 교부한다.

제6조 이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.